

서면 질문답변서

(사무1과)

질문의원	김복동 의원
【질 문】 ○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우리구의 단독주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전교부의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2005.1.14)	
【답 변】 ○ 2005년도에 새로 도입된 단독주택의 과표체계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되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주관아래 각 시·군·구에서 2005. 4. 30 까지 주택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 우리구의 공시 대상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약 1만 6천 호로써 이를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절차로 공시하게 되며 종로구 홈페이지, 현수막, 반상회보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절차를 거치고, 가격공시 이후에도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단독주택 소유 주민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가격 산정 과정에서 부동산평가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통하여 공평한 주택가격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